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검찰 PROSECUTION SERVICE	전주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최원석 전화 063-259-4308 / 팩스 0502-193-8088	보 도 자 료 2023. 5. 3.(수)

제 목	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불법대출 사건 수사결과 - 공사금액 부풀려 국가지원 대출금 24억 편취한 시공업체 운영자 등 총 15명 기소 -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
- **전주지방검찰청(검사장 문홍성)**은 국무조정실에서 수사의뢰한 **'태양광발전소 관련 국가지원 대출금 편취 사건'**을 수사한 결과,

  - 국민들로부터 전기요금의 3.7%를 징수하여 조성된 **전력산업기반기금***을 **저리로 대출**해주는 **한국에너지공단**의 **'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'** 지원 과정에서,

  *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국민들로부터 강제로 징수하는 준조세적 법정부담금으로 공공성이 매우 강한 기금임

  - **태양광발전소 관련자들**이 자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공사금액을 부풀려 작성한 **'업(UP)계약서'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**하여 **24억 원 상당의 부정대출**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**공사비 전액을 국가지원 대출금으로 충당**한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여,

  -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운영자·발전사업자 등 **총 15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**

- **전주지방검찰청**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고, 향후에도 국고를 낭비하는 **국가재정범죄**에 대하여 **엄정 대응**할 것임

1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	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	태양광 발전사업자	공소사실 요지
1	A○○	H○○	공모하여 '20. 7.~'21. 6. **총 4회**에 걸쳐 공사금액을 부풀린 허위 공사계약서, 세금계산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금 합계 **약 8억 4,100만 원**을 편취하여 **[사기]**
2		I○○	
3		J○○	
4		K○○	
5	B○○	L○○	공모하여, '20. 6.~'20. 7. **총 2회**에 걸쳐 공사금액을 부풀린 허위 공사계약서, 세금계산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금 합계 **약 6억 1,500만 원**을 편취하여 **[사기]**
6		M○○	
7	C○○		공모하여, '21. 10. **총 4회**에 걸쳐 공사금액을 부풀린 허위 공사계약서, 세금계산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금 합계 **약 4억 2,000만 원**을 편취하여 **[사기]**
8	D○○		
9	E○○		
10	F○○	N○○	공모하여, '21. 4. 공사금액을 부풀린 허위 공사계약서, 세금계산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금 **약 3억 9,200만 원**을 편취하여 **[사기]**
11	G○○	O○○	공모하여, '21. 8. 공사금액을 부풀린 허위 공사계약서, 세금계산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금 **약 1억 3,500만 원**을 편취하여 **[사기]**

※ C○○, D○○, E○○ 등은 태양광 발전사업자이나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지식을 이용, 직접 부정대출을 실행

2 수사 경과

- '22. 10. 17. **국무조정실, 대검찰청에 수사의뢰**
- '22. 10.~2. 각 금융기관, 세무서, 시공업체 사무실 등 압수수색(전주지검 수사과)
- '23. 5. 2. **태양광발전소 관련자 총 15명 불구속 기소**

3 수사 결과

가. '신·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' 개요

- **신·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**은 금융기관이 태양광을 비롯한 신·재생에너지 관련 발전사업자에게 시설 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**전력산업기반기금*을 재원(財源)으로 하여 일반대출보다 저리(低利)의 대출금을 지원하는 사업임**

* **전력산업의 발전 및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**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으로, **국민들로부터 전기요금의 3.7%를 강제로 징수하여 조성**하는 **준조세적 법정 부담금**으로서, **공공성이 매우 강한 기금**임(전기사업법 제48조)

- 태양광발전소 관련자들은 ① 한국에너지공단 신·재생에너지센터에 **공사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자금추천**을 받고 ② 금융기관에 **위 자금추천서 및 세금계산서 등 자료를 제출**하여 **공사금액의 70% 내지 90%를 대출받음**

나. 검찰 직접수사를 통한 대출사기·국가재정범죄 규명

- 수사 결과, **태양광발전소 관련자들은** 신·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대출받은 공사금액 이외에 **나머지 약 10~30%의 공사대금은 자부담**하여야 함에도, 공사금액을 부풀린 **소위 '업(UP)계약서'를 신·재생에너지 센터와 금융기관에 제출**하여 사실상 **공사대금 전액을 대출**받음으로써 공사대금 자부담을 회피하여 **국가재정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**하였음

- **전주지방검찰청**은 국무조정실에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5곳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은 직후 금융기관, 세무서 등을 상대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공받고, **시공업체 사무실 5곳에 대한 압수수색** 및 **총 36회에 걸친 관련자 조사** 등의 **직접 수사**를 통해,

  - **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실운영자 1명, 발전사업자 11명을 추가 인지**하여 **불구속 기소**하였음

  - 이로써 전주지방검찰청은 **다수가 가담한 24억 원 상당의 대출사기·국가재정범죄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**하였음

4 향후 계획

- **국가재정범죄**는 국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해하는 **중대범죄임**
-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, **향후에도 국고를 낭비하는 국가재정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**임. ▨